

대전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4가단216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중중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변론 종결 2016. 8. 9.

판결 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중구 U 임야 18,248㎡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각 지분에 관하여 2016. 2.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일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2호)

판사 허승

별지 1. 상속지분표

피고(망 의 재산상속인)		상속 지분
피고 1.		103194 / 2619540
피고 2.		412776 / 2619540
피고 3.		76356 / 2619540
피고 4.		82620 / 2619540
피고 5.		55080 / 2619540
피고 6.		55080 / 2619540
피고 7.		128520 / 2619540
피고 8.		128520 / 2619540
피고 9.		61236 / 2619540
피고 10.		17199 / 2619540
피고 11.		17199 / 2619540
피고 12.		17199 / 2619540
피고 13.		17199 / 2619540
피고 14.		17199 / 2619540
피고 15.		17199 / 2619540
피고 16.		9702 / 2619540
피고 17.		27636 / 2619540
피고 18.		32928 / 2619540
피고 19.		32928 / 2619540

별지 2. 청구원인

1. 원고 종중은 주문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원인 망 V과 소외 망 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1971. 12. 20. 망 V과 망 W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망 V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3. 따라서 망 V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끝.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1. 망 V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증인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인 대전 중구 U 입야 1824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사경상 중원인 소외 망 V 과 망 W 에게 각 2분의 1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여 위 두 사람의 공물 명의로 1971.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
니다.

나. 그러던 중 망 W 의 상속인 소외 X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1996. 12.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망 V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지 못한 채, 1977. 8. 20. 당시 거주하던 대전 중구 Y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상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갑제5호 증의 '세적등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 지분은 아직 망 V 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 망 V의 재산상속인들

가. 망 V 이 사망(1977. 8. 20. 사망)할 당시에는 ① 처 망 Z (1990.

4. 13. 사망), ② 장남 망 AA (1976. 2. 3. 먼저 사망, 피대습상속인),
 ③ 딸 망 AB (1949. 5. 1. 혼인신고, 당시 출가녀, 2009. 10. 27. 사망),
 ④ 딸 망 AC (1954. 12. 30. 혼인신고, 당시 출가녀, 1979. 6. 11. 사
 망), ⑤ 딸 피고 B (1963. 1. 15. 혼인신고, 당시 출가녀), ⑥ 아들
 피고 C 가 있었습니다.

나. 망 V (1977. 8. 29. 사망)이 사망할 당시의 민법(1960. 1. 1. - 1978.
 12. 31. 시행)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상속분 1)을 하고,
 이 중 효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 5할을 가산(상속분 1.5)하고, 여자 상속
 분은 남자의 2분의 1(상속분 0.5)이고, 출가녀(동일한 가격 내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상속분 0.25)이고, 처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시에는 남자의 2분의 1(상속분 0.5)입니다.

다. 따라서 처인 망 Z (상속지분 0.5)은 $\frac{2}{15}$ 지분[$= 0.5 / 1.5 + 0.5 +$
 $0.25 + 0.25 + 0.25 + 1.0$], 효주상속(대습상속)의 몫이 있는 망 AA
 (상속지분 1.5, 효주 상속은 망 AA 의 장남 망 AD 이 대습상속함)
 은 $\frac{6}{15}$ 지분[$= 1.5 / 1.5 + 0.5 + 0.25 + 0.25 + 0.25 + 1.0$], 출가한 딸
 인 망 AB (상속지분 0.25), 출가한 딸인 망 AC (상속지분 0.25), 출
 가한 딸인 피고 B (상속지분 0.25)은 각 $\frac{1}{15}$ 지분씩[$= 0.25 / 1.5 +$
 $0.5 + 0.25 + 0.25 + 0.25 + 1.0$], 피고 C (상속지분 1.0)는 $\frac{4}{15}$ 지분
 [= $1.0 / 1.5 + 0.5 + 0.25 + 0.25 + 0.25 + 1.0$]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

습니다.

라, 망 V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망 Z : 2/15 지분
- ② 망 AA : 6/15 지분
- ③ 망 AB : 1/15 지분
- ④ 망 AC : 1/15 지분
- ⑤ 피고 B : 1/15 지분
- ⑥ 피고 C : 4/15 지분

3. 망 V의 아들 망 AA의 대습상속인들

가. 대습상속인들의 상속지분

- (1) 망 V(1977. 8. 29. 사망)의 재산에 대한 피대습상속인 망 AA(1976. 2. 3. 사망)의 대습상속인은 처 피고 D, 호주대습상속을 한 아들 망 AD(2013. 10. 20. 사망), 아들 피고 H, 아들 피고 I,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J(1982. 1. 18. 혼인신고)이 있습니다.
- (2) 망 V의 재산에 대하여 피대습상속인 망 AA이 가지고 있는 상속지분은 6/15지분입니다.

(3) 망 V (1977. 8. 29. 사망)이 사망할 당시의 민법(1960. 1. 1. - 1978. 12. 31. 시행)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상속분 1)을 하고, 이 중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 5할을 가산(상속분 1.5)하고, 여자 상속인은 남자의 2분의 1(상속분 0.5)이고, 출가녀(동일한 가액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상속분 0.25)이고, 처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에는 남자의 2분의 1(상속분 0.5)입니다.

(4) 그렇다면 피대습상속인 망 AA (1976. 2. 3. 사망)의 상속지분은 호주 상속을 한 아들 망 AD (2013. 10. 20. 사망)에게 1.5 지분, 처 피고 D에게 0.5 지분, 아들 피고 H, 같은 피고 I에게 각 1.0 지분씩,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J에게 0.5 지분이 상속되었습니다.

(5) 따라서 망 AA의 재산에 대하여 망 AD은 $\frac{3}{9}$ 지분[$= \frac{1.5}{1.5 + 0.5 + 1.0 + 1.0 + 0.5}$], 피고 D는 $\frac{1}{9}$ 지분[$\frac{0.5}{1.5 + 0.5 + 1.0 + 1.0 + 0.5}$], 피고 H, 피고 I은 각 $\frac{2}{9}$ 지분씩[$= \frac{1.0}{1.5 + 0.5 + 1.0 + 1.0 + 0.5}$], 피고 J은 $\frac{1}{9}$ 지분[$\frac{0.5}{1.5 + 0.5 + 1.0 + 1.0 + 0.5}$]을 각 상속 받았습니다.

(6) 그러므로 망 V의 상속재산 중 피대습상속인 망 AA의 상속지분인 $\frac{6}{15}$ 지분은 망 AD에게 $\frac{18}{135}$ 지분[$= \frac{6}{15} \times \frac{3}{9}$], 피고

D에게 $6/135$ 지분[$= 6/15 \times 1/9$], 피고 H, 피고 I에게 각 $12/135$ 지분씩[$= 6/15 \times 2/9$], 피고 J에게 $6/135$ [$= 6/15 \times 1/9$]이 상속되었습니다.

나. 망 AA의 아들 망 AD의 상속인들

(1) 그런데, 위 망 AD은 2013. 10. 20.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E, 자 피고 F, 피고 G가 있습니다.

(2) 망 AD의 망 V의 재산 중 $18/135$ 지분을 상속하였습니다.

(3) 망 AD(2013. 10. 20. 사망)이 사망할 당시의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모두 균등하게 1.0씩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 E의 상속지분은 1.5 지분, 피고 F, 피고 G의 상속지분은 각 1.0 지분씩이므로, 이는 피고 E이 $3/7$ 지분[$1.5 / 1.5 + 1.0 + 1.0$], 피고 F, 피고 G가 각 $2/7$ 지분씩[$1.0 / 1.5 + 1.0 + 1.0$]을 상속 받은 것입니다.

(4) 따라서 망 V의 피대습상속인 망 AA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AD이 상속 받은 $18/135$ 지분은 피고 E에게 $54/945$ 지분[$18/135 \times 3/7$], 피고 F, 피고 G에게 각 $36/945$ 지분씩[$18/135 \times 2/7$]이 상속되었습니다.

4. 망 V의 딸 망 AB의 상속인들

가. 망 AB (2009. 10. 27. 사망)이 사망 당시 상속인은 남편 망 AE (2013. 6. 12. 사망), 자 피고 K, 자 피고 L, 자 피고 M, 자 피고 N, 자 피고 O, 자 피고 P이 있습니다.

나. 망 AB은 망 V의 재산 중 1/15지분을 상속하였습니다.

다. 망 AB (2009. 10. 27. 사망)이 사망할 당시의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는 1.5 지분, 자녀들은 모두 균등하게 1.0 지분씩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 AB의 남편 망 AE (2013. 6. 12.)는 상속 받은 후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 AB과 망 AE의 재산은 각 자녀들에게 1.0 지분씩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은 각 1/6 지분씩 $[1 / 1 + 1 + 1 + 1 + 1 + 1]$ 을 상속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망 V의 상속재산 중 망 A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1/15지분은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에게 각 1/90 지분씩 $[1/15 \times 1/6]$ 이 상속된 것입니다.

5. 망 V의 딸 망 AC의 상속인들

가. 망 AC (1979. 6. 11. 사망)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남편 망 AF (2011. 7. 7. 사망),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R (1981. 6. 25. 혼인), 아들 피고 S,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T가 있습니다.

나. 망 AC는 망 V의 재산 중 1/15 지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다. 망 AC가 사망한 1979. 6. 11. 당시의 민법(1979. 1. 1. - 1990. 12. 31. 시행)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상속분 1)을 하고,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을 하면 고유지분에 5할을 가산(상속분 1.5)하고, 출가녀(동일한 가액 내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상속분 0.25)이고, 남편(배우자)의 경우는 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동일가액 내에 있는 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남편 망 AF는 1.5 지분,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R, 아들 피고 S,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 T는 모두 각 1.0 지분씩의 상속지분을 갖게 되므로, 망 AC의 재산에 대하여 망 AF는 3/9 지분[1.5 / 1.5 + 1.0 + 1.0 + 1.0], 피고 R, 피고 S, 피고 T는 각 2/9 지분씩[1.0 / 1.5 + 1.0 + 1.0 +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그러므로 망 V의 재산 상속인 망 AC의 상속지분 1/15 지분은 망 AF에게 3/135 지분 $[1/15 \times 3/9]$, 피고 R, 피고 S, 피고 T에게 각 2/135지분 $[1/15 \times 2/9]$ 지분씩 상속이 되었습니다.

바. 그런데, 망 AC의 상속인으로서 망 V의 재산에 대하여 3/135 지분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망 AF는 1992. 4. 1. 피고 Q와 재혼을 한 뒤 피고 Q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채 2011. 7. 7. 사망하였으며, 망 AF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재혼한 처 피고 Q와 자녀 피고 R, 같은 피고 S, 같은 피고 T가 있습니다.

사. 망 AF(2011. 7. 7. 사망)가 사망할 당시의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는 15 지분, 자녀들은 모두 균등하게 10 지분씩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망 AF의 처 피고 Q은 15 지분, 피고 R, 피고 S, 피고 T에게는 10 지분씩 상속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Q에게 3/9 지분 $[15 / 15 + 10 + 10 + 10]$, 피고 R, 피고 S, 피고 T에게 각 2/9 지분씩 $[10 / 15 + 10 + 10 + 10]$ 망 AF의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아. 따라서 망 AF가 망 V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135 지분 상속지분은 피고 Q에게 9/1,215 지분 $[3/135 \times 3/9]$, 피고 R, 피고 S, 피고 T에게 각 6/1,215 지분씩 $[3/135 \times 2/9]$ 이 상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망 V의 상속인 망 AC의 상속지분 1/15 지분은 피고 Q에게 9/1,215 지분, 피고 R, 피고 S, 피고 T에게는 각 24/1,215 지분씩[2/135지분(망 AC로부터 직접 상속) + 6/1,215 (망 AG로부터 상속)]을 상속 받은 것입니다.

6. 망 Z (망 V의 처)의 상속인들

가. 당시 민법

(1) 망 V (1977. 8. 29. 사망)의 재산을 2/15 지분 상속 받았던 망 V의 처 망 Z은 1990. 4. 13. 사망하였습니다.

(2) 망 Z이 사망할 당시인 민법(1979. 1. 1. - 1990. 12. 31. 시행)에 따르면 처에게만 시부모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었고, 남편에게는 처의 부모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민법 제1003조 2항).

(3) 또한, 망 Z (1990. 4. 13. 사망)이 사망할 당시의 위 민법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상속분 1)을 하고,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을 하면 고유지분에 5할을 가산(상속분 1.5)하고, 출가녀(동일한 가격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상속분 0.25), 처(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동일가격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었습니다.

나. 망 Z의 상속인들

- (1) 1990. 4. 13. 사망한 망 Z의 재산은 남편 망 V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인 망 AA (1976. 2. 3. 사망, 피대습상속인), 피고 C에게 각 1.0 지분씩, 출가한 딸 망 AB (2009. 10. 27. 사망, 1949. 5. 1. 혼인), 출가하여 사망한 딸 망 AC (1979. 6. 11. 사망, 피대습상속인, 1954. 12. 30. 혼인), 출가한 딸 피고 B (1963. 1. 15. 혼인)에게 각 0.25 지분씩, 아들인 피고 C에게 1.0 지분이 상속되었으므로, 이는 망 AA에게는 4/11 지분, 망 AB, 망 AC, 피고 B에게는 각 1/11 지분씩이 상속되었습니다.

- (2) 따라서 망 V의 재산에 대하여 망 Z이 가지고 있는 2/15 지분의 상속지분은 망 AA, 피고 C에게 8/165 지분씩[2/15 x 4/11], 망 AB, 망 AC, 피고 B에게 각 2/165 지분씩[2/15 x 1/11]이 상속되었습니다.

다. 망 Z의 아들 망 AA의 대습상속인들

- (1) 대습상속인들의 상속지분

- (가) 망 Z (1990. 4. 13. 사망)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상속인 망 AA (1976. 2. 6. 사망)의 대습상속인은 처 피고 D, 호주상속을 한

아들 망 AD (2013. 10. 20. 사망), 아들 피고 H, 아들 피고 I, 출가한 딸 피고 J (1982. 1. 18. 혼인)이 있습니다.

(나) 망 Z (1990. 4. 13. 사망) 사망일 당시의 민법(1979. 1. 1. - 1990. 12. 31. 시행)에 따라 피대습상속인 망 AA의 대습상속인 처 피고 D는 15 지분, 호주상속을 한 아들 망 AD (2013. 10. 20. 사망)은 15 지분(호주상속인), 아들 피고 H은 10 지분, 피고 I은 10 지분, 출가한 딸 피고 J은 0.25 지분을 상속 받았으며, 이는 피고 D가 6/21 지분, 망 AD이 6/21 지분, 피고 H, 피고 I이 각 4/21 지분씩, 피고 J이 1/21 지분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다) 따라서 망 V의 상속재산에서 망 Z이 상속 받은 지분 중 망 AA이 상속 받은 8/165 지분은 피고 D에게 48/3,465 지분 $[8/165 \times 6/21]$, 망 AD에게 48/3,465 지분 $[8/165 \times 6/21]$, 피고 H이 32/3,465 지분 $[8/165 \times 4/21]$, 피고 I이 32/3,465 지분 $[8/165 \times 4/21]$, 피고 J이 8/3,465 지분 $[8/165 \times 1/21]$ 을 각 상속 되었습니다.

(2) 망 AA의 아들 망 AD의 상속인들

(가) 망 AD (2013. 10. 20. 사망)의 재산은 현행 민법에 따라 처 피고

E이 3/7 지분, 피고 F, 피고 G가 각 2/7 지분씩을 상속 받았습니다.

(나) 따라서 망 V의 상속인 망 Z이 상속 받은 지분에서 망 AD이 대습상속 받은 48/3,465 지분은 피고 E에게 48/8,085지분 [48/3,465 x 3/7], 피고 F, 피고 G에게 각 32/8,085지분씩 [48/3,465 x 2/7]이 상속되었습니다.

라. 망 Z의 딸 망 AB의 상속인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AB (2009. 10. 27. 사망)의 상속인들 지분은 현행 민법에 따라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이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습니다.

(2) 따라서 망 V으로부터 망 Z이 상속받은 지분에서 망 AB이 상속 받은 위 2/165 지분은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에게 각 1/495 지분씩 [2/165 x 1/6]이 상속된 것입니다.

마. 망 Z의 딸 망 AC의 대습상속인들

(1) 망 Z (1990. 4. 13. 사망)이 사망할 당시 민법에서는 피대습상속인 외 처에게만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아 피대습상속인 망 AC (1979.

6. 11. 사망)의 남편 망 AF 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 AC 의 자녀들로서 출가한 딸 피고 R (1981. 6. 25. 혼인)이 0.25 지분, 아들 피고 S , 출가하지 않은 피고 T (미혼)가 각 1.0 지분씩을 상속하여, 피고 R 이 1/9 지분, 피고 S , 피고 T 가 각 4/9 지분씩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망 V 의 재산 중 망 Z 이 상속받은 지분 중 망 AC 의 상속 지분 $2/165$ 지분은 피고 R 이 $2/1,485$ 지분 [$2/165 \times 1/9$], 피고 S , 피고 T 가 각 $8/1,485$ 지분씩 [$2/165 \times 4/9$]을 각 상속한 것입니다.

7. 피고들의 상속지분

가. 피고들이 망 V 으로부터 직접 받은 상속지분과 망 Z 을 거쳐 상속 받은 상속내역 및 이에 대한 합계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등 구할 상속지분에 대하여 분모를 통분하여 나타낸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 상속지분 표 -

순 번	성 명	망 V 의 상속인 중 망 Z 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상속지분	망 V 의 재산에 대하여 망 Z 을 거쳐 상속받은 지분	망 V 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총 합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속지분 * 망 V 의 공유지분 1/2을 적용함
1	B	1/15	2/165	13/165	13/330
2	C	4/15	8/165	52/165	52/330
3	D	5/135	48/3,465	606/10,395	606/20,790
4	E	54/945	48/8,085	4,590/72,765	4,590/145,530
5	F	36/945	32/8,085	3,060/72,765	3,060/145,530
6	G	36/945	32/8,085	3,060/72,765	3,060/145,530
7	H	12/135	32/8,085	1,020/10,395	1,020/20,790
8	I	12/135	32/3,465	1,020/10,395	1,020/20,790
9	J	6/135	8/3,465	486/10,395	486/20,790
10	K	1/90	1/495	13/990	13/1,980
11	L	1/90	1/495	13/990	13/1,980
12	M	1/90	1/495	13/990	13/1,980
13	N	1/90	1/495	13/990	13/1,980
14	O	1/90	1/495	13/990	13/1,980
15	P	1/90	1/495	13/990	13/1,980
16	Q	9/1,215	없음	9/1,215	9/2,430
17	R	24/1,215	2/1,485	282/13,365	282/26,730
18	S	24/1,215	8/1,485	336/13,365	336/26,730
19	T	24/1,215	8/1,85	336/13,365	336/26,730

10. 결 론

따라서 원고는 광 V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별지 2 기재 각 표시 내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에 기하여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